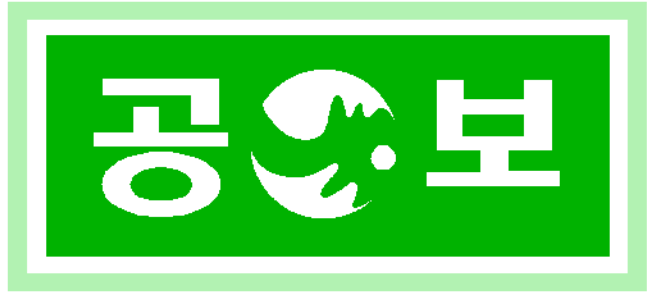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기 관 의 장



제 677 호 2011. 1. 17(월)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공고 제2011-24호[임대조건 신고내용 공고] 2
- 울산광역시 북구공고 제2011-37호[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
- 울산광역시 북구공고 제2011-38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
- 울산광역시 북구공고 제2011-39호[울산광역시 북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
- 울산광역시 북구공고 제2011-40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7
- 울산광역시 북구공고 제2011-41호[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9
- 울산광역시 북구공고 제2011-42호[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2
- 울산광역시 북구공고 제2011-43호[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4

회 람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문화홍보과(☎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24호

임대조건 신고내용 공고

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대조건 신고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임대 사업자	상 호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전화번호	055)269-8343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8 2번지				
임대 주택	주 택 명	달선 그린카운티 1,2,3,4단지				
	주 택 소 지 지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107, 107-1, 107-6, 107-7번지				
	주 택 우 형	아파트				
	주 택 종 류	국민임대주택				
임대 조건	세 대 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전용면적	세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59.82㎡	86	33,248,000원	207,800원		
	합계	86				
	임대기간	2011.03.01 ~ 2013.02.28				
신고일자	2010.12.2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세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단순증명·고부민원 수수료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관리선사용의지징(어선사용승인)신청 : 1건 3,000원 → 1,000원
- 어업권원부의열람신청 : 1건 500원 → 800원
- 어업권원부등초본고부신청 : 1건 1,000원 → 800원
-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1건 800원(신설)
- 부동산중개사부소의 등록증의 재교부 : 1건 3,000원 → 8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과 (전화:219-7265, 팩스:219-72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세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 - 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인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울산광역시 북구 투·융지사업 실시규칙」은 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를 정비·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기능 중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219-7203, fax 219-721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이 조례안 전문은 우리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며 방문 열람도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 - 3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인부를 개정함이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2011. 1. 1)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여·축제 등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 대상사업 기준액의 단위 총사업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안 제2조제1항)
- 나.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안 제4조, 제5조)
- 다. 연 2회 실시하던 정기 투자심사를 연 3회로 확대(안 제6조)
- 라.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되어난 사업중 재심사 기준액을 10억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219-7203, fax 219-721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이 규칙안 전문은 우리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며 방문 열람도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1-40호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은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

3. 주요내용

- 가.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신설(안 제9조)
- 나. 기금운용의 심의를 「울산광역시 복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구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10조)
- 다. 위원장 등의 직무 신설(안 제11조)
- 라. 위원회의 운영 신설(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시설재난관리과, 전화 219-7654, 팩스 219-7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외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5. 기 다

『울진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시설재난관리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1- 41호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제정 이유

도로의 부속물 등을 차량충격 등 인위적으로 손괴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제 조례」를 제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줄이고 도로의 부속물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도로의 부속물 손괴 시 확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함.
제2조	(정의)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및 기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가로등·가로수·도로인내표지판 등) 및 손괴자를 정의함.

제3조	(신고방법)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의 신고는 시면·구두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위치사항 및 피신고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손괴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제4조	(신고대상)	도로의 부속물 손괴 시 손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진화 등으로 울산광역시청 구청에 신고하여 「울산광역시 북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가능케 한 자로 규정함.
제5조	(지급제외 대상)	도로의 부속물 침지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발사하는 공부위, 파손 성적이 심각한 경우, 구청 등 관치기관이 불가피하게 손피하는 경우 및 경찰 등 유원기관과의 협조로 손괴사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함을 규정함.
제6조	(지급기준)	포상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규정함.
제7조	(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에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함을 규정함.
제8조	(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의 포상금의 환수 등을 규정함.
제9조	(신고자의 보호)	신고자의 신원 등에 관한 비밀보장을 규정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의견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사 신고포상금 시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건설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마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 (전화 052-219-7442, 팩스 052-219-7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기타사항

-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려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위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변경(안 제5조의2 신설)
- 구조정위원회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전화:219-7482, 팩스:219-749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건축주택과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며 방문 열람도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0. 10. 25 ~ 11. 10 행정안전부 기금운용실태 감찰결과, 현행 공무원으로 구성된 「규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관련 분야를 심의함에 따라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토록 근거한 상의법 위반으로 지적되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대행 : 규정조정위원회 ⇒ 생활보장위원회(안 제6조)
-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 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처 : 우-683-707/울산광역시 북구 산역로 1010 북구청 생활지원과 (☎ 219-7324, FAX 219-73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